

2016.10.07

'태풍 『차바』 피해업체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' 안내

1. 시행 취지

관세청은 제 18호 태풍 『차바』의 영향으로 부산, 울산 등 남부 지방에서 제조시설·수출입물품의 침수 등 **직간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 업체 및 화물관리 업체를 위한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을 시행**합니다.

2. 지원 방안

1) 수출물품 선적기간 연장

- 태풍·호우 피해로 수출물품 적기 선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선적기간 연장 허용

2) 피해 수입물품 감면

- 침수로 수입물품 손상 시 즉시 손상감면 적용 통관

3) 전산장애 시 수작업 수출입신고

- 수출입업체 전산장애로 수출입신고 곤란 시 인편·팩스 등으로 수출입신고 처리

2016.10.07

'태풍 『차바』 피해업체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' 안내

2. 지원 방안

4) 보세운송기간 연장 즉시 허용

- 태풍·폭우로 인해 수입물품 보세운송을 지정한 기간 내에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즉시 보세운송기간 연장

5) 보세화물 처리 지원

- 재해를 입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공매·보류를 허용하고 피해화물에 대한 폐기·멸실, 보수작업 신속 처리 지원

6) 세금 납부 기한 연장

- 태풍피해 기업의 납부세액(수정보정세액 포함)에 대하여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납기연장·분할납부 지원

2016.10.07

‘태풍 『차바』 피해업체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’ 안내

2. 지원 방안

7) 관세조사 유예연기

- 2016년도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태풍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하여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며, 이미 조사 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 희망 시 관세 조사 연기

8) 체납처분 유예

- 태풍피해가 발생한 체납업체의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

9) 피해지원 전담팀 운영

- 피해 발생 지역 10개 세관에 수출입 기업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피해규모 파악 및 기업별 관세행정 지원 실시